#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30 제출연월일: 2016. 4. 7.

제 출 자 : 중구청장

## 1. 개정이유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 관련 쓰레기봉투 대금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한편,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료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쓰레기 봉투 용도·색상 변경(안 별표 1)
  - 재사용 종량제봉투 종류 세분화 :  $10\,\ell$  ,  $20\,\ell$   $\rightarrow$   $5\,\ell$  ,  $10\,\ell$  ,  $20\,\ell$
- 나.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인상 : 6% → 9%(안 별표 3)
- 다. 쓰레기봉투 제작 시 인쇄문구 상세화(안 제14조제2항, 제3항)
- 라. 쓰레기봉투 대금지원 대상자 변경(안 제18조제1호)
  - 수급자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마.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제3호·제4호·제6호·제7호)

# 3. 근거법규

- 가.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
- 나.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5. 8. 5)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 가. 예산 조치사항 : 예산담당 협의
-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미반영(사유서 첨부)
- 라. 부패유발요인의 검토 : 해당없음
- 마. 입법예고 : 2016. 2. 22. ~ 2016. 3. 14.(의견 없었음)
- 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 가결

#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쓰레기봉투 제작 시 인쇄문구는 자치단체명, 봉투용량·재질·용도· 사용법, 홍보문구(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쓰레기 무단투기 행 위 금지 등), 이 사 등으로 인한 반품 방법 등을 간결하게 표기할 수 있다."

제18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갑 위반행위자란 및 을 위반행위자란의 "주민등록번 호"를 각 각 "생년월일"로, 별지 제4호 서식 중 납부의무자란의 "주민 등록번호"를 "생년 월일"로 하고, 별지 제6호 서식 중 신청인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별지 제7호 서식 중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란 중 "주민등록번 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지 1

## 【별표 1】

쓰레기봉투의 용량·용도·색상 및 재질(제13조제2항)

봉투용량	용 도	색 상	재 질
<b>5</b> ℓ	재사용	흰색 (반투명)	
10 ℓ	재사용	흰색	폴리에틸렌
20 ℓ	재사용	(반투명)	(단, <del>공공용은</del> 폴리프로필렌)
50 ℓ	일반용	녹색	(C, 666C <u>21—</u> 12C)
100ℓ	일반용	※공공용-청색	

## 【별표 2】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4조제4항)

- 2. 문장(전면)
  - 일반용·재사용 쓰레기봉투 공공용 쓰레기봉투

울산광역시 중구의 문장 쓰레기봉투(용량)

- 용 도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화번호

공공용 쓰레기봉투

(울산광역시 중구의 문장)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이 봉투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재사용봉투는 손잡이가 있으며, 일반용은 끈으로 조르는 방식임

# 별 지 2

# [별표 3]

#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제15조제1항)

(단위 : 원)

			(
용량(ℓ)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5 ℓ	146	14	160
10 ℓ	282	28	310
20 ℓ	546	54	600
50 ℓ	1,356	134	1,490
100 ℓ	2,694	266	2,960

#### 혂 개 정 안

#### 제14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생략)

- ②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인쇄문구는 단면에 만 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문장을 간결하게 표시하 고, 적정 크기의 유료 또는 공익광고문안을 표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유료 또는 공익광고 게재시에는 광 고주가 동판제작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④ (생략)
- ⑤ (생략)

## **제14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현행과 같음)

② 쓰레기봉투 제작 시 인쇄문구는 자치단체명, 봉투용량·재질·용도·사용법, 홍보문구(생활폐기 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금지 등), 이사 등으로 인한 반품 방법 등을 간 결하게 표기할 수 있다.

〈삭 제〉

- ④ (현행과 같음)
- ⑤ (현행과 같음)

# 제18조 (쓰레기봉투 대금지원) ------ 제18조 (쓰레기봉투 대금지원) ------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 (생략)

#### [별표 1]

쓰레기 봉투의 용량·용도·색상 및 재질(제13조제2항)

봉투용량	<u>용 도</u>	<u>색 상</u>	<u>재 질</u>
<u>5ℓ</u>	<u>일반용</u>	<u>녹색</u>	
<u>10ℓ</u>	<u>일반용</u>	흰색	폴리에틸렌
<u>20ℓ</u>	<u>일반용</u>	<u>(반투명)</u>	<u> </u>
<u>50ℓ</u>	<u>일반용</u>	녹색	폴리프로필레
<u>100ℓ</u>	일반용 공공용	<u>※<del>교용</del>청색</u>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2. (현행과 같음)

#### [별표 1]

쓰레기 봉투의 용량·용도·색상 및 재질(제13조제2항)

봉투 용량	용 도	<u>색 상</u>	<u>재 질</u>
<u>5 ℓ</u>	재사용	흰색 (반투명)	
<u>10 ℓ</u>	재사용	흰색	폴리에틸렌
<u>20 ℓ</u>	<u>재사용</u>	<u>(반투명)</u>	(단, 공공용은
<u>50ℓ</u>	<u>일반용</u>	녹색	폴리프로프레)
<u>100ℓ</u>	일반용 공공용	<u> </u>	

## [별표 2]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4조제4항)

행

현

- 1. 쓰레기봉투의 크기 : (생 략)
- 2. 문장(전면)
- 일반용 쓰레기봉투공공용 쓰레기봉투

#### 이곳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의 문장

쓰레기봉투(용량)

- 용 도 -

<u>(주의사항)</u>

울산광역시 중구

전화번호

공공용 쓰레기봉투

(울산광역시중구의문장)

울산광역시중구청장 (이 봉투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봉투 묶는 표시는  $50\ell$  및  $100\ell$  쓰레기봉투만 해당

#### [별표 3]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제15조제1항)

(단위 : 원)

	<u>쓰</u> 러	기봉투	<u>가격</u>	쓰레기봉투 공급액			
<u>용량(ℓ)</u>	공급액	<u>판매</u> 수수료	<u>판매액</u>	<u>수집</u> 운반비	처리비	<u>봉투</u> 제작비	
<u>5 ℓ</u>	<u>151</u>	9	160	130	<u>3</u>	<u>14</u>	
<u>10 ℓ</u>	292	<u>18</u>	310	<u>259</u>	<u>6</u>	20	
<u>20 ℓ</u>	<u>564</u>	<u>36</u>	<u>600</u>	<u>518</u>	<u>12</u>	<u>32</u>	
<u>50ℓ</u>	1,401	89	1,490	1,293	<u>32</u>	<u>69</u>	
<u>100 ℓ</u>	2,783	<u>177</u>	2,960	2,586	<u>64</u>	126	

㈜ 쓰레기봉투 용량별 공급액 증감차액분은 봉투제작

비에 수용 조정한다.

#### [별표 2]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14조제4항)

개 정 안

- 1. 쓰레기봉투의 크기 : (현행과 같음)
- 2. 문장(전면)
  - 일반용 재사용 쓰레기봉투 공공용 쓰레기봉투

공공용 쓰레기봉투

<u>울산광역시 중구의 문장</u>

쓰레기봉투(용량)

- 용 도 -

(주의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전화번호

(울산광역시 중구의 문장)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이 봉투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u>㈜</u> 재사용봉투는 손잡이가 있으며, 일반용은 끈으로 <u>조르는 방식임</u>

#### [별표 3]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제15조제1항)

(단위: 원)

용량(ℓ)	<u>공급가격</u>	<u>판매수수</u> 료	<u>판매가격</u>
<u>5 ℓ</u>	<u>146</u>	<u>14</u>	<u>160</u>
<u>10 ℓ</u>	<u>282</u>	<u>28</u>	<u>310</u>
<u>20 ℓ</u>	<u>546</u>	<u>54</u>	<u>600</u>
<u>50ℓ</u>	<u>1,356</u>	<u>134</u>	<u>1,490</u>
<u>100ℓ</u>	2,694	<u> 266</u>	<u>2,960</u>

			7	현	행					개 정 안
<b>[별</b> (갑)	지 저 )	]3호	서식	l						[ <del></del> ] (갑)
I	바태로	로처	분 및	납부통	통지소	1				
	행	제	회계		세입			좌		
	년호 1반	호 성	연도		과목 주소		번	호		
현 고	방위자 내대료	명		원	납부	!				
	3액 1반	일			기간 내용		장	소		
\	.년 '반	시폐기	 물	발부	-110		의	견	까지	
	률	관리 제	법 <u>조</u>	일자			진 기	간		<u>생년</u>
	위반 방위자	서 명		<u>주민등</u> <u>록번호</u>			년 공 확	큐원		월일
니 <u></u> 특기	 ']사항	-					-10			
<i>(</i> <b>o</b>										(0)
(을		±1 🛏	OL LL	<b>∃</b>	1					(을)
     	· 대 뇨 /  발행	ᄸᅩ	및 납 <u>·</u> 회계	F & A /	지   세입		계좌		$\neg \mid$	
-	번호 위반	호 성			과목 주소		번호		-	
-	행위자 과태료 금액			원	납 부 기간	까지	납부 장소		+	
	위반 사실	일.			내용		92			
-	위반 법률	관	l 기물 기법	발부 일자	I		의견 <b>잔술</b>	까지		
-	위반	세		<u>주민등</u>			기만 단속		$+ \mid$	생년
	행위자			<u>록번호</u>			공원 확인			<u>월일</u>
:	이 1 바랍 2. 위반 기관 있으 음날 3. 과타	과태료 반사실 발사실 알며, 날부터 배료처 1이내 법원0	실에 대해 로를 부괴 에 의견( 출석하여 과태료 발생됩니 분에 물특 에 이의[ 에 자대 를 산 광	하니 지 기 있는 : 의견을 처분의 호 니다. 록이 있는 를 제기 흘 료 재판을	정된 기 경우 위 진술하 호력은 경우 있 할 수 있 발 받게	I간 및 의 의견 거나 서 의견진술 처분의 그 으며, () 됩니다.	장소에 진술기  면으로 흥기간0 교지를	납부히 간까지 제출형   종료원 받은 닐	사기 처분 할 수 린 다	

۲	현 히	9		개	정 안	
[별지 제4호 서	  식]		[		]	
TI = 71 (		÷ TL			<u>-</u>	
	대료 납부 독 <sup>6</sup> <u>②</u> 3	- 8 <u>- 민등록</u>			<u> ②생년월일</u>	
납 부 ①성명	Ę	<u>보호</u>				
의무자 ③주소			_	_		
④ 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           ⑤ 위반				_		
사항						
⑥ 과태료	75	당초납부				
금액	כ	1일				
위 과태료 금액이 체닡	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닡	<u> </u>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병	y			
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려	라 강제징수하기	베 됩니다.				
년	월	일				
딘	2	2	_			
울 산 광 9	벽 시 중 구 청	장 (인)				
		장 (인)				
울산광의 [ <b>별지 제6호</b> 서		장 (인)	[		]	
[별지 제6호 서	식]		[		]	
[별지 제6호 서 과태료투	<b> 식]</b> <sup>르</sup> 과취소(변경):   ②	신청서	[		]  ②생년월일	
[별지 제6호 서 과태료투 입 (한자)	<b> 식]</b> <sup>르</sup> 과취소(변경):   ②	신청서	[		<u> </u>	
[별지 제6호 서 과태료투 입 (한자)	<b> 식]</b> <sup>르</sup> 과취소(변경):   ②	신청서			<u> </u>	
[별지 제6호 서 과태료투	<b>식</b> ] <sup>보</sup> 과취소(변경) (2 변	신청서 )주민등록 (호 )납부통지			<u> </u>	
### #################################	[설명 ] 보고취소(변경): 보 보 (중 (중 (중 (중)	신청서 )주민등록 <u> </u> 호     압부통지   번호			<u> </u>	
### #################################	[설명 ] 보고취소(변경): 보 보 (중 (중 (중 (중)	신청서 2주민등록 번호 바보통지 반보호 과태료금				
### #################################	스] ] 보과취소(변경): (2 보	신청서 2주민등록 번호 바보통지 반보호 과태료금				
[별지 제6호 서 과태료투 (한자) 실형 ③ 주소 4 라타내역 ⑥고지받은 일자 용과태료 처분사유	스] ] 보과취소(변경): (2 보	신청서 2주민등록 번호 바보통지 반보호 과태료금				
[별지 제6호 서 과태료투 (한자) 신청명 의 ③주소 오비 원부과기관 과태료 처분내역 ⑥고지받은 일자 용과태료 처분사유	스] ] 보과취소(변경): (2 보	신청서 2주민등록 번호 바보통지 반보호 과태료금				
### ### ############################	스] ] 르과취소(변경). [2 발	신청서 )주민등록 년호 (납부통지 )번보호 (과태료금				
[별지 제6호 서 과태료투 (한자) 신청명 의 ③주소 오비 원부과기관 과태료 처분내역 ⑥고지받은 일자 용과태료 처분사유	스] ] 르과취소(변경). [2 발	신청서 2주민등록 번호 바보통지 반보호 과태료금				
### ### #############################	스] ] <sup>2</sup> 과취소(변경). (2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신청서  [주민등록				
### ### #############################	스] ] <sup>2</sup> 과취소(변경). (2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신청서  [주민등록]  [호호]  [합부통지]  [번호    [과대료금    [대한 기 바랍니다.				
### ### #############################	함의 규정에 으 조치하여 주시	신청서  [주민등록]  [호호]  [합부통지]  [번호    [과대료금    [대한 기 바랍니다.				
### ### #############################	함의 규정에 으 함의 규정에 으 조치하여 주시	신청서  [주민등록    [호호]  [한부통지    [번호    [과태료금    [한 대한				

## 혂 개 정 안 행 [별지 제7호 서식] [-----] 제 발 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 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성명 (한자) ② 주 민 등 록 과태료 <u>번호</u> 처분에 ③주소 대한 이의 제기자 ②생년월일 ④ 고 지 ⑤ 과 태 료 금 과태료 일자 처분 ⑥ 부 과 ⑦ 이 의 제 기 기간 일자 내역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 제15조제1항 별표 3 공급·판매가격
- 2. 비용추계의 전제
- 판매소 쓰레기봉투의 공급가격·판매가격

(단위:원)

구분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공급가격	151	292	564	1,401	2,783
판매수수료(6%)	9	18	36	89	177
판매가격	160	310	600	1,490	2,960

※ 쓰레기 수집·운반비 및 종량제봉투 처리비 등은 산정하지 않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구분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H 드 및 네	판매 <i>수</i> 수료 (6%)인 경우	2,676,452	2,837,039	3,007,261	3,187,697	3,378,959	15,087,408
봉투판매 수입	판매 <i>수수</i> 료( 9%)인 경우	2,591,033	2,746,496	2,911,285	3,085,962	3,271,120	14,605,895
	증 감 액	△85,419	△90,544	△95,976	△101,735	△107,839	△481,513

※ 전년대비 봉투사용량 매년 5% 증가 가정

#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천원)

구분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구 비	85,419	90,544	95,976	101,735	107,839	481,513

부대의견 : 해당없음
 협의사항 : 해당없음

3. 작 성 자 : 환경미화과장 정 점 섭(☎ 290-3751)

#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 1. 재원분담계획

(단위:천원)

구분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구 비	85,419	90,544	95,976	101,735	107,839	481,513

# 2. 재원조달방안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판매수수료 인상분 만큼 봉투판매가격을 올려 재원을 조달해야 하나, 판매가격 인상시 주민저항과 서민경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타 구·군과 연계, 점진적 가격인상으로 재정 부족분을 해소하고자 함

3. 부대의견 : 해당없음

4. 협의사항 : 해당없음

5. 작성자 : 환경미화과장 정 점 섭(☎ 290-3751)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울산중구008					
정 책 명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소관부서	부서명	환경미화과				
	담당자명	황정희	전화번호	052-290-362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2월 19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환경미화과)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성별영향 분석평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개정의 주요내용은 쓰레기 봉투 용도·색상 변경(안 별표 1),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인상(안 별표 3), 쓰레기봉투 제작시 인쇄문구 상세화 (안 제14조제2항, 제3항), 쓰레기봉투 대금지원 대상자 변경 (안 제18조제1호),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등에 대한 내용임.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	음 □ 자체기	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ul> <li>○ 개정사항의 [별지 제3,4,6,7호 서식]의 성별 기입란 추가를 제안함.</li> <li>○ 이는 성별통계를 구축하여 폐기물 관리에 대한 성별 현황 등을 파악하고, 성별특성을 반영하여 교육 및 추후 개선 사항 등을 모색하기 위함임.</li> <li>○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2016년 3월 2일 까지</li> </ul>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02월 23일

# 울산광역시 중구 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은주/052-290-3623)

환경미화과장 귀하

#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검토의견

※ 담당자 : 사회복지과 이은주 (T.052-290-3623)

제(개) 정 안	검 토 의 견		
게(개) 경 단	수정안	검토사유	
[별지 제3, 4, 6, 7호 서식] <b>생년월일</b>	[별지 제3, 4, 6, 7호 서식] 생년월일 성별	<종합 검토 의견> 참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16A울산중구008					
정 책 명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소관부서	부서명	환경미화과				
	담당자명	황정희	전화번호	052-290-3762		
주요 분석평가 내용 (환경미화과)	<ul> <li>○「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성별영향 분석평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li> <li>○ 개정의 주요내용은 쓰레기 봉투 용도·색상 변경(안 별표 1), 쓰레기 봉투 판매수수료 인상(안 별표 3), 쓰레기봉투 제작시 인쇄문구 상세화 (안 제14조제 2항, 제3항), 쓰레기봉투 대금지원 대상자 변경 (안 제18조제1호), 별지 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등에 대한 내용임</li> </ul>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정사항의 [별지 제3,4,6,7호 서식]의 성별 기입란 추가를 제안함. ○ 이는 성별통계를 구축하여 폐기물 관리에 대한 성별 현황 등을 파악하고, 성별특성을 반영하여 교육 및 추후 개선 사항 등을 모색하기 위함임.					
검토의견 반영 계획 (환경미화과)	<ul> <li>○ [별지 제3,4,6,7호 서식]은 각각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납부독촉장, 과태료 부과취소 신청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임.</li> <li>○ 쓰레기불법 소각 및 투기자에 대해 과태료처분시 행정내부 (세외수입)시스템으로 위반자 성명, 주민번호, 부과내역 등을 관리하고 있어 내부자료를 이용해 성별 통계자료 추출 가능함.</li> <li>○ 따라서 위반자 또는 법원에 통지되는 별지 서식에 성별 기입란추가는 의미없다고 판단되어 미반영 코자함.</li> </ul>					
2016년 03월 02일						

2016년 03월 02일

# 환경미화과장

분석평가책임관 귀하

# 의 안심사보고서 (의 안번호 1230)

1. 의 안 명 :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심사경과

- O 제출연월일: 2016. 4. 7.(목)
- O 제 출 자: 중구청장
- O 위원회회부 : 2016. 4. 11.(월) O 위원회심사 : 2016. 4. 19.(화)
-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김성규 복지경제국장)

### 가. 제안이유

○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변경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관련 쓰레기봉투 대금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한편,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료를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쓰레기 봉투 용도·색상 변경(안 별표 1)
  - 재사용 종량제봉투 종류 세분화 :  $10\ell$ ,  $20\ell \rightarrow 5\ell$ ,  $10\ell$ ,  $20\ell$
-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인상 : 6% → 9%(안 별표 3)
- 쓰레기봉투 제작 시 인쇄문구 상세화(안 제14조제2항, 제3항)
- 쓰레기봉투 대금지원 대상자 변경(안 제18조제1호)
  - 수급자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제3호·제4호·제6호·제7호)

## 4.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
-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5. 8. 5)

## 5.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익희)

-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2015.08.05.)으로 쓰레기 봉투 제작 시 인쇄문구 상세화 등 시행지침 변경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 대금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적용으로 별지서식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 경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 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